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23
----------	-------

발의연월일 : 2018. 10. 10.

발의자 : 박광온 · 송갑석 · 권칠승

김영주 · 전현희 · 김종민

이춘석 · 윤관석 · 김현권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호 등).

법률 제 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34조제2항, 제40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u>당해</u>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4. ----- ----- ----- ----- ----- <u>해당</u>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① · ② (생 략)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u>당해</u>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③ ----- ----- ----- ----- ----- ----- ----- ----- ----- ----- ----- ----- <u>해당</u>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임면권자에게 당해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가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2분의 1 이상이 재외국민 또는 그 자녀인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해당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

있는 경우에는 <u>당해</u> 외국 법령 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	----- <u>해당</u> ----- ----- -----.
--------------------------------------------------------------	------------------------------------------